

자 체 감 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2년 김천소방서 자체감사 —

2022. 10.



1. 행정상 일람표

(단위 : 천원)

번호	소 관	건 명	행정상 조치		재 정 상 조 치					
			시정	주의	회 수		감 액		추 징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계		6건	3	3	1	8,855	0	0	0	0
1	김 천 소 방 서	특정업무경비 및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1		1	8,855				
2	김 천 소 방 서	조치명령 연기승인 및 휴지 위험물시설 사후관리 부적정	1							
3	김 천 소 방 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관한 사항		1						
4	김 천 소 방 서	수익계약 내역의 공개에 관한 사항		1						
5	김 천 소 방 서	소방공무원 공가 사용 부적정	1							
6	김 천 소 방 서	행사운영비 집행 부적정		1						

2. 처분요구일람표

1.	특정업무경비 및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시정)	1
2.	조치명령 연기승인 및 휴지위험물시설 사후관리 부적정(시정)	5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관한 사항(주의)	10
4.	수익계약 내역의 공개에 관한 사항(주의)	12
5.	소방공무원 공가 사용 부적정 (시정)	14
6.	행사운영비 집행 부적정 (주의)	16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특정업무경비 및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소 관 청	김천소방서
관 계 부 서	AAA과
내 용	

1. 특정업무경비 지급 부적정

김천소방서 AAA과에서는 소방령 이하 화재진압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관 및 119안전센터 구급요원 등에게 특정업무경비로 방호활동비와 구조구급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2]에 따르면 특정업무경비(방호활동비, 구조구급활동비 등)는 특수업무 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방호활동비 170천원, 구조구급활동비 100천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99호, 2019.12.31.)에 따르면 특정업무경비(방호활동비, 구조활동비) 지급에 대해 파견, 휴직 등으로 특정업무담당분야에 1개월 이상 근무를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발령(명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파견, 휴직 등으로 특정업무분야에 1개월 이상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령(명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고, 근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는 특정업무경비(방호활동비, 구조구급활동비)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1]과 같이 소속직원이 파견, 휴직 등으로 특정업무분야에 1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2018. 3월부터 2021. 12월까지 30명

에게 특정업무경비 7,996,975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

[표1] 특정업무경비(방호활동비, 구조구급활동비) 부적정 지급 현황

연번	대상자			부적정 지급내역 (단위 : 원)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내역
	연도	직급	성명	합계	방호	구조구급	
합	계			7,996,975	6,849,000	1,147,975	
1	2018	내용	생략	71,290	71,290	-	병가(18.03.19. ~ 18.05.17.) 휴직(18.10.01. ~ 18.12.31.)
2	2018			32,900	32,900	-	교육(18.04.30. ~ 18.07.06.)
3	2018			375,460	375,460	-	교육(18.07.09. ~ 18.09.14.)
4	2018			561,280	334,510	226,770	병가(18.10.08. ~ 18.12.06.)
5	2019			312,590	312,590	-	교육(19.01.28. ~ 19.03.22.)
6	2019			186,450	186,450	-	교육(19.04.01. ~ 19.05.03.)
7	2019			287,420	180,970	106,450	교육(10.07.29. ~ 19.08.30.)
8	2019			296,130	186,450	109,680	교육(19.04.01. ~ 19.05.03.)
9	2019			334,520	334,520	-	교육(19.06.24. ~ 19.08.30.)
10	2019			334,340	334,340	-	병가(19.09.03. ~ 19.11.01.)
11	2019			90,670	90,670	-	교육(19.04.15. ~ 19.06.21.)
12	2019			531,290	334,520	196,770	교육(19.06.24. ~ 19.08.30.)
13	2019			90,670	90,670	-	교육(19.04.15. ~ 19.06.21.)
14	2020			331,000	334,340	-3,340	병가(20.04.06. ~ 20.06.04.)
15	2020			131,610	131,610	-	병가(20.07.08. ~ 20.08.07.)
16	2020			850,000	850,000	-	휴직(20.02.01. ~ 20.12.31.)
17	2020			120,640	120,640	-	병가(20.08.10. ~ 20.10.07.) 휴직(20.11.02. ~ 20.12.31.)
18	2020			451,215	338,380	112,835	병가(20.02.05. ~ 20.04.04.)
19	2020			93,770	93,770	-	교육(20.06.28. ~ 20.08.14.)
20	2020			181,330	181,330	-	병가(20.06.29. ~ 20.08.27.)
21	2020			131,610	131,610	-	휴직(20.01.27. ~ 20.07.07.)
22	2020			301,650	189,930	111,720	병가(20.08.17. ~ 20.09.19.)
23	2021			87,100	-	87,100	휴직(21.06.21. ~ 21.12.31.)
24	2021			53,2905	56,630	-3,340	병가(21.06.21. ~ 21.08.20.)
25	2021			345,490	345,490	-	병가(21.01.12. ~ 21.03.12.)
26	2021			9,000	5,670	3,330	병가(21.11.30. ~ 21.12.31.)

연번	대상자			부적정 지급내역 (단위 : 원)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내역
	연도	직급	성명	합계	방호	구조구급	
27	2021			226,300	226,300	-	병가(21.06.23. ~ 21.08.02.)
28	2021			297,960	297,960	-	교육(21.06.21. ~ 21.08.13.)
29	2021			540,000	340,000	200,000	교육(21.05.10. ~ 21.07.09.)
30	2021			340,000	340,000	-	교육(21.05.10. ~ 21.07.09.)

2. 휴직자 등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김천소방서 AAA과에서는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있다.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대하여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되,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17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에 따르면 휴직일수, 1개월 이상 연속된 교육과견 기간 및 공무상병가를 제외한 연간 통상 병가 등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휴직 및 1개월 이상 교육과견 등 공무원에게는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 및 교육과견 기간을 공제하고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소속직원이 과견, 휴직 등으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았는데도 그 기간을 공제하지 않고 연가보상비를 산정하여 아래 [표2]와 같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8명에게 연가보상비 858,860원을 과다하게 지급하였다.

[표2] 연가보상비 부적정 지급 현황

(단위 : 일, 원)

연번	년도	직급	성명	파견, 휴직 등 기간	연가보상비 지급(부적정)				적정 연가보상비		과다지급액
					연가일수	사용일수	연가보상일	연가보상비	연가보상일	연가보상비	
합 계											858,860
1	2018	내용	생략	미근무103일	6	0	6	275,800	5	229,830	45,970
2	2018			휴직 119일	22	6.58	11	733,110	9	599,820	133,290
3	2018			휴직 119일	13	7	6	303,060	2	101,020	202,040
4	2018			교육 103일	12	5.12	5	240,850	4	192,680	48,170
5	2018			미근무 145일	12	0.72	8	385,360	7	337,190	48,170
6	2018			미근무145일	6	1.3	4	175,540	3	131,650	43,890
7	2021			교육 60일	17	12.604	4	224,880	1	56,220	168,660
8	2021			교육 60일	17	5.5	11	618,430	8	449,760	168,670

조치할 사항 김천소방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고,(주의)
- ② 부당하게 지급된 특정업무경비 및 연가보상비 8,855,835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조치명령 연기승인 및 휴지 위험물시설 사후관리 부적정
소 관 청	김천소방서
관 계 부 서	BBB과
내 용	

김천소방서 BBB과에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법령 위반 대상물에 대한 조치 등의 관련 업무와 휴지 위험물 제조소등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조치명령 연기승인 절차 부적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에 따르면 조치명령을 받은 관계인은 태풍, 홍수 등 재난이 발생하거나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경매 등 소유권 변동 및 다수의 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의견조정과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연기하여 줄 것을 소방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에 따르면 조치명령의 연기신청 절차는 연기신청서에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행기간 만료 5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연기신청서를 접수한 소방서장은 3일 이내에 조치명령의 연기신청 여부를 결정하여 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르면 소방서장이 조치명령 기간 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조치명령을 받은 관계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기신청 결과의 통지는 신청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재난과 질병, 경매 등으로 조치명령 기간에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정할 만한 상당한 증명 자료를 확인하고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1]과 같이 관계인이 신청한 연기신청서에 조치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음을 증명 가능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는데도 객관적 판단 자료 없이 연기신청을 승인하였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다수의 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의견조정과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내부적인 검토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¹⁾하여 연기신청을 승인하였다.

[표1] 조치명령 연기신청 부적정 내역

연번	대 상 명	조치명령 만료일	연기 신청일	연기결과 통보일	사 유	비고
1	내용생략	'18.08.26.	'18.08.21.	'18.08.21.	예산 부족	연기사유 부적정
2		'18.11.12.	'18.11.09.	'18.11.09.	질병	증빙서류 미제출
3		'19.04.08.	'19.03.26.	'19.03.27.	예산 부족	연기사유 부적정
4		'19.05.13	'19.05.07.	'19.05.08.	공사 연기	"
5		'19.05.14	'19.05.08.	'19.05.08.	예산 부족	"
6		'19.06.27.	'19.06.19.	'19.06.19.	예산 부족	"
7		'19.07.14.	'19.07.08.	'19.07.08.	예산 부족	"
8		'19.08.12.	'19.07.12.	'19.07.15.	예산 부족	"

1)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소방서장이 조치명령 기간 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조치명령 연기 승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결재과정에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4호의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 다수의 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의견조정과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연기한 다는 의견으로 기재하여 결재를 득함

연번	대 상 명	조치명령 만료일	연기 신청일	연기결과 통보일	사 유	비고
9		'19.08.01.	'19.07.26.	'19.07.26.	부품 조달	"
10		'19.08.06.	'19.07.31.	'19.07.31.	자재 수급	"
11		'19.08.19.	'19.08.14.	'19.08.14.	예산 부족	"
12		'19.10.03.	'19.09.23.	'19.09.23.	예산 부족	"
13		'19.10.03.	'19.09.27.	'19.10.01.	예산 부족	"
14		'20.02.23.	'20.02.14.	'20.02.18.	일정 지연	"

2. 휴지 위험물시설 사후관리 부적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및 제12조, 제14조 등에 따르면 제조소등을 설치·변경하고자하는 자는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 중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설치·변경 허가를 받은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관련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방서장은 그 제조소등의 유지·관리상황이 위험물 저장·취급 기술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위치·구조 및 설비의 수리·개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설치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조소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제조소등의 휴지(休止)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2005. 8. 1, 구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경영부진·대규모 공사변경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제조소등을 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은 휴지 개시 신고를 하여야 하고, 탱크·배관·공정설비 등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설비에서 위험물 및 가연성증기를 제거하는 안전조치뿐만 아니라 관계자 이외의 자가 함부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며, 휴지 사실을 게시하는 등의 적절한 관리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 업무처리 지침에는 휴지기간 동안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 선임,

정기점검 등 해당 관계인의 의무를 유예토록 하고 있으나 관계인이 안전조치 및 관리를 하지 않은 상태로 휴지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화재 예방 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조소등을 용도폐지토록 지도하거나 사용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휴지기간이 1년 이상 지난 제조소등에 대해서는 그 시설의 관계인이 휴지에 따른 안전조치 및 관리 등의 이행 여부를 현장 확인·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시설의 안정성, 위험물 저장·취급 기술기준 적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위험물시설의 사용정지, 허가취소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2]와 같이 2018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휴지 신고 제조소등 33개소 중 휴지기간이 1년을 초과한 5개소에 대해 짧게는 1년 9개월에서 길게는 2년 9개월이 지나도록 관계인의 안전조치 및 관리 실태, 화재 예방 지장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한 현장 확인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다.

[표2] 휴지기간 1년 이상 위험물 시설 현황

연번	구분	대상명	휴지개시일	휴지기간	현장 확인	비고
1	옥내탱크저장소	내용생략	'19.09.18.	2년 9월	미이행	
2	옥내탱크저장소		'19.10.22.	2년 8월	"	
3	주유취급소		'20.07.31.	1년 11월	"	
4	일반취급소		'20.03.30.	2년 3월	"	
5	일반취급소		'20.09.17.	1년 9월	"	

조치할 사항 김천소방서장은

- ① 앞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명령 연기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시고,(주의)

② 휴지기간이 1년을 초과한 CCC 등 5개소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 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관한 사항
소 관 청	김천소방서
관 계 부 서	AAA과
내 용	

김천소방서 AAA과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 설계서를 검토한 후 해당 사업을 발주·계약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6272호)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9-64호) 제3조에 따르면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기준 제5조에 따르면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공고 등을 통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알려야 하며, 발주자와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도급계약서에 별도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대상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안전관리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은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을 말하며, 대상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공사는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 계상기준에 따라 해당 비율(요율)을 곱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공사내역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관급자재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 등을 발

주자가 직접 제공한 것이라면 대상액에 포함되며, 공사내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총공사금액은 재료비(발주자가 따로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한 금액),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구성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하고,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도급계약서에 별도로 표시하여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 3건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계상 사업 현황

(단위 : 원)

연도	사업명	계약일자	총공사금액	안전관리비 대상액	안전관리비	비고
합계	총 3건		94,776,600	75,125,620	1,987,110	
2020	내용 생략	2020.12.31.	36,756,600	25,729,620	753,870	건축물 설비공사
2020		2020.12.29.	21,802,000	19,820,000	366,670	특수 및 기타건설 공사
2020		2020.12.31.	36,218,000	29,576,000	866,570	건축물 설비공사

※ 김천소방서 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김천소방서장은

앞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 건설공사에서 해당 금액 계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관한 사항
소 관 청	김천소방서
관 계 부 서	AAA과
내 용	

김천소방서 AAA과에서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각종 계약을 체결하고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2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의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발주계획, 입찰공고(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 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 개찰의 결과,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감리·감독·검사의 현황, 대가의 지급현황을 계약이행 완료일부터 5년 이상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수의계약 계약체결 현황, 대가의 지급현황 등 수의계약 내용을 계약이행 완료일부터 5년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공사, 물품, 용역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의의 방법으로 계약한 8건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표] 수의계약 인터넷 홈페이지 미게시 내역

(단위 : 원)

연번	구분	적용	계약금액	계약일	계약상대자
	계	총8건	151,634,446		
1	물품	내용 생략	37,000,000	2018-11-30	○○○
2	물품		10,640,000	2018-11-30	○○○
3	공사		10,000,000	2019-03-18	○○○
4	공사		24,584,446	2019-12-03	○○○
5	용역		8,921,000	2019-12-06	○○○
6	용역		18,414,000	2019-12-06	○○○
7	공사		9,955,000	2020-12-31	○○○
8	공사		32,120,000	2020-12-31	○○○

※ 김천소방서 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김천소방서장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소방공무원 공가 사용 부적정
소 관 청	포항북부소방서
관 계 부 서	AAA과, BBB과, CCC
내 용	

김천소방서에서는 소속 직원이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검진 등의 사유로 공가 신청하는 경우 승인하고 있다.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르면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건강검진 또는 건강진단을 받을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하도록 되어 있고,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또는 정밀건강진단,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구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같은 날에 받는 경우로 한정하여 공가를 승인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위 관서에서는 매년 소방공무원 일반·특수건강진단 추진계획에 의거 소방공무원 건강검진·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공가를 신청한 직원의 공가 신청사유를 확인하여 공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가 사용을 승인하여야 하고, 공가 사용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공가를 신청한 직원에게 연가 또는 병가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21. 10월부터 2022. 6월까지 공상

처리로 인한 병가 대상인 휴가를 공가로 사용하도록 승인하였고, 일반 건강검진으로 1년에 2회 공가를 사용하게 하는 등 공가 사용을 부당하게 승인하였다.

[표] 공가 부적정 사용 현황

연번	소속	계급	성명	공가사용일	공가사유	비고
1	CCC		J	2021.10.18.	공무상요양신청 결과에 따른 일반병가 공상으로 변경 신청	공가사유 해당되지 않음
2	BBB		K ^{주1)}	2022.02.14. 2022.06.09.	건강검진	1년 2회
3	AAA		L ^{주2)}	2022.05.31. 2022.06.27.	건강검진	

주1) 2021년 대장내시경 검진 미실시로 2022.2.14. 대장내시경 검진

주2) 2022.5.31. 건강검진 후 고혈압 확진 대상자로 통보받아 2022.6.27. 공가 4시간 사용

조치할 사항 김천소방서장은

- ① 앞으로 공가 신청사유를 확인하여 공가 사용에 해당되는 경우에 공가사용을 승인하시고,(주의)
- ② ▲ J가 2021년 병가 미사용으로 인한 2022년 가산 휴가를 삭감하시고, ▲ K, L이 2022년도 공가로 잘못 사용한 건강검진일(시간)은 연가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행사운영비 집행 부적정
소 관 청	김천소방서
관 계 부 서	DDD과, FFF과
내 용	

김천소방서에서는 원활한 행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집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훈령)」 제13조 및 [별표3]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르면 행사운영비는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로 행사지원을 위해 참여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식비 등을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행사에 참여한 초청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 행사관련 기념품이나 기관 선물의 구입 등은 행사운영비에서 집행할 수 없으며, 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행사실비지원금 또는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행사에 참여한 초청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는 행사실비보상금 또는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하고, 행사지원을 위해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의 식비는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 DDD과 및 FFF과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행사지원을 위해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의 식비 및 간식비를 행사운영비로 집행하였다.

[표] 행사운영비 부적정 집행현황

(단위 : 원)

연번	집행일자	예산과목	집행내용	집행금액	비고
합계				988,000	
1	2018.12.30.	행사운영비	내용 생략	176,000	DDD
2	2021.09.09.	행사운영비		420,000	FFF
3	2021.09.09.	행사운영비		392,000	FFF

조치할 사항 김천소방서장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훈령)」을 준수하여 세출예산을 집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